

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573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10. 5 | 고 성 군 수 |
| 나. 회부일자 : 1999. 10. 6 | |
| 다. 상정·의결일자 : 1999. 10. 25 | 총무위원회 상정·의결 |

2. 개정사유

- 1999년 4월 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코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(안 제4조)
- 나. 은의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의 행정 간소화 및 민원인 편의 제공(안 제5조제3항)
- 다.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취득·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함.(안 제6조제3항)
- 라. 사용허가 조건에서의 손해보험증서 제출, 사용허가표지 부착 등은 실효성이 없는 사항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건 폐지(안 제13조제5항, 제6항)
- 마.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최저요율을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 감액 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신설(안 제22조의1제3항)
- 바. 대부료·사용료 및 매각대금 감면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외국인의 투자기업 범위 확대
(안 제22조의2제1호 나목·다목, 제2호 가목·나목, 제3호 가목·나목, 제38조의4제1항제4호, 제3항제2호, 제3호, 제4항제3호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및 경상남도표준안 근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
- 공공시설의 위탁관리,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, 매각대금의 분할납부, 대부료·사용료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규정상 미비된 사항을 개선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공공시설물 위탁단체의 범위와 마을 공동시설물도 범주에 속하는지
- 답 : 단체는 등록된 단체에 한하며, 마을 공동시설물도 해당 범주에 속함.

6. 토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9. 10. 2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